

회계업무처리기준

제 정 2015.12.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단위) ① 본점, 지점, 센터를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점으로 하여 이를 회계단위로 한다.

② 각 회계단위의 총괄은 회계담당부서에서 한다.

제 2 장 계정과목의 분류

제3조(계정과목) ① 회계처리에 필요한 계정과목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 계정과목의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별도의 기준 계정과목이 없고,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④ 업무에 필요한 세부계정과목의 신설 또는 변경은 회계담당부서장이 정한다.

제4조(계정과목의 유지관리) 계정과목을 신설, 개정 및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과 「국가회계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장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원가계산

제5조(원가계산의 일반원칙) ① 원가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② 원가 집계 대상별로 분리 가능한 직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에 직접 부과하고,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간접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방법은 매기 계속해서 적용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간접원가 배부기준) 간접원가 배부기준은 적용이 가능하고 산출이 용이한 것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1. 인원수 또는 인건비
2.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3. 사용면적 또는 자산금액
4. 신용보증 및 회생지원 업무량
5. 기타 합리적인 방법

제7조(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제8조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 수익이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제9조 (프로그램 순원가) ①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한다.

제10조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제11조 (비배분비용) ① 비배분비용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②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평가손실
2. 자산감액손실
3. 자산처분손실
4. 이자비용
5. 재해손실, 임대자산 비용 등 기타 비용

제12조 (비배분수익) ① 비배분수익은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② 비배분수익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수익
2. 평가이익
3. 감액손실환입
4. 자산처분이익
5. 보험차익, 중단사업이익 등 기타 수익

제13조 (재정운영순원가) ①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합계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재정운영순원가는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순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제 4 장 전 표

제14조(분개의 전산입력) ①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거래를 분개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한다.

② 분개의 입력방법은 전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분개장) ① 분개장에는 당일의 모든 거래를 분개 및 기재한다.

② 분개장은 전산으로 출력되는 전표 및 일계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각 회계단위는 당일 분개장을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적요란의 기재) 분개를 할 때 적요란에는 거래의 내용을 간결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기재한 보조원장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한다.

제17조(당일분개의 정정) 당일 분개한 내용 중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다시 분개한다.

제18조(전일이전 분개의 정정) ① 분개 처리한 다음날 이후에 분개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정분개는 잘못을 발견한 일자로 처리하고 적요란에 정정 표시를 한다.
 2. 당초 분개의 대변의 오류는 차변으로, 차변의 오류는 대변으로 취소한 후 정당분개 처리한다.
 3. 정당분개 처리 시 정정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요란에 당초 분개일자과 정정사유를 간명하게 기재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오류금액과 정당금액의 차액만을 정정할 수 있다.

제19조(전기이전분의 정정) ① 전기이전에 발생한 오류를 당기에 정정할 때에는 당초 분개와 관계없이 정정분개와 정당분개를 작성하고, 적요란에 “전기이전분 정정”이라고 기재한다.

② 손익계정 중 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를 정정할 때에는 오류금액과 정당금액의 차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한다.

제 5 장 장 부

제20조(장부의 기재) 장부의 기재는 전산에서 정하는 분개입력으로 실시한다. 다만, 수기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보조부의 적요 및 금액은 전산에 입력한 분개내용과 일치시켜야 함
2. 잔액의 차대부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히 표시
3. 잔액란이 있는 장부는 각 행마다 잔액을 기재. 다만, 각 행마다 잔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다음 장면(帳面)에 이월하는 때와 당일의 최종 거래 행에만 잔액을 기재할 수 있다.

제21조(장부의 정정) 장부의 오류는 정정분개로 정정한다. 다만, 수기장부의 단순한 기재상의 오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정한다.

1. 적요 및 금액의 오기: 해당 오류사항을 평행2주선으로 말소하고 그 위 정당한 적요 및 금액을 기재
2. 기장 착오로 공란이 생겼을 경우: 해당 란을 평행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적서로 기재
3.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경우: 당해면 우측상부로부터 좌측 하부까지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면”이라 적서로 기재
4. 장부 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장부에 전기함으로써 여백이 생긴 경우: 해당 여백란의 첫란에 그 뜻 (“이하여백 ○○에 전기”)을 적서로 기재
5. 금액 일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
6. 계좌명칭 변경: 기존 명칭을 평행2주선으로 말소하고 상부에 새로운 명칭을 기재하고 변경 일자와 사유를 적서로 기재
7. 선을 잘못 그었을 경우: 해당 선의 양 끝에 취소부호 “×”를 적서로 기재
8. 금액의 기입이 누락되었을 경우: 소급하여 정정하지 아니하고 발견 당일의 일반수급과 같이 기입하며 적요란에 누락일자를 적서로 기재
9.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의 말소 주선 상에는 취급자와 책임자가 날인 또는 서명

제22조(장부의 마감시점) 장부의 마감시점은 전산에 의한 마감절차에 따른다. 다만, 수기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의 마감시점은 다음에 의한다.

1. 현금출납장: 매일 마감
2. 요구불예금출납장: 매일 마감
3. 총계정원장, 손익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 매월 말일 마감

제23조(장부의 마감방법) ① 매일 마감하는 현금출납장 및 요구불예금출납장은 최종 기재행 아래에 선을 긋고 일계(日計)를 기재한 후 선을 그어 마감한다.

② 월말 마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월계와 누계를 산출하되 월계란에는 대변과 차변으로 월계를 각각 산출하여 기재한 후, 최종잔액 해당액을 누계로 산출
 2. 최종 기재행 아래에 선을 긋고 “월계”와 “누계”란에 건 수, 금액을 각각 기재한 후 누계행 아래에 선을 그음
- ③ 기말 마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월계와 누계를 기재한 아래에 잔액을 차대 반대변에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적요란에는 “차기이월”이라 기재
2. 제1호에 따라 기재한 “차기이월” 아래에 다시 주선을 긋고 차대변 총계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평행2주선을 그어 마감
3. 차대변의 구별이 없는 장부는 최종 기재행 아래에 주선을 긋고 누계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평행2주선을 그어 마감

④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는 장부는 전산으로 마감절차를 입력함으로써 장부 마감에 갈음한다.

제24조(장부의 이월) 장부를 이월하는 경우에는 잔액만을 이월하되 적요란에 “전기이월”이라 기재한다.

제25조(이월일자) 차기이월 및 기초이월 일자는 휴일에 불구하고 해당연도 말일 및 다음 연도 초일자로 한다.

제6장 마감절차

제26조(본지점 정리) ① 본지점의 거래는 자점 발생거래점이 타점 발생거래점으로 전산통지한다.

② 타점발생거래점은 본지점거래가 발생한 해당 영업일에 본지점거래를 정리한다.

제27조(일일마감) ① 당일거래를 완료한 때에는 본지점 타점 발생거래를 조회한 후 타점발생거래 정리가 완료되면 본지점거래를 마감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현금출납장, 요구불예금출납장, 일계표, 전표분개장을 출력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편철하여 보관한다. 다만, 전표분개장의 경우에는 출력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회계담당자는 총계정일계표와 손익계정일계표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확인한다.

제28조(수급액의 이기) ① 총계정원장 및 손익계정원장에의 전기는 전산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총계정원장의 잔액은 총계정원장잔액장에, 손익계정원장의 잔액은 손익계정원장잔액장에 매일 이기(移記)한다.

제29조(본점의 마감) 본점의 마감업무는 회계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제30조(현금의 수급) 본점의 현금 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단 관리 및 유가증권 관리에 따른 현금수급 : 회계담당부서에서 담당
2. 기타 본점의 현금수급 : 회계담당부서에서 담당
3. 고유목적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에 한정하여 사업 수행 부서가 현금 수급을 담당 가능

부 칙 (제정)

이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계정과목 일람표

계정과목 일람표

1. 자 산

일반기업회계기준	계 정 과 목 설 명	국가회계기준
I. 유동자산		I. 유동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금융상품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 1년이하의 금융상품	2. 단기금융상품
3. 유동성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 채무증권 중,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내 만기도래 자산	3. 단기투자증권
4. 유동성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 채무증권 중,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내 만기도래 자산	3. 단기투자증권
5. 구상채권		5. 기타유동자산
(1) 구상채권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채권	(5-9) 구상채권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구상채권 회수불능에 대비하여 설정한 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재보충손실보전금)	재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전금	(재보충손실보전금)
6. 기타의 유동자산		
(1) 대지급금	구상권입체 등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비용, 소송비용 등	(6-1) 대지급금
(대지급금상각충당금)	대지급금 회수불능에 대비하여 설정한 충당금	(대지급금상각충당금)
(2) 미수금	신용카드수납 미수금, 재보충손실보전금 미수금 등	(6-2) 미수금
(3) 미수수익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등 미수수익의 기말보정액	4. 미수채권 (4-1) 미수수익
(4) 선급비용	보험료 기말보정, 법인카드 결제대금 선결제, 법인카드 일부취소본 선지급 등	(6-3) 선급비용
(5) 선급법인세	예치금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액	(6-4) 선급법인세
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II. 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로 만기가 도래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	1. 장기금융상품 (1-1) 정기예금
(2)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서울풍물시장금융지원유한회사 출자금	3. 장기투자증권 (3-1) 채무증권, (3-2) 지분증권
(3) 만기보유증권	국채, 지방채, 후순위채, 국민주택채권	(3-1) 채무증권
(4) 주입종장기대여금	직원주택마련 대여자금,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여금	2. 장기대여금
(5) 풍물시장대여금	서울풍물시장금융지원유한회사에 대여한 대여금	2. 장기대여금
2. 유형자산		III. 일반유형자산
(1) 업무용토지	본점 사옥 등 보유자산	1. 토지
(2) 업무용건물	본점 사옥 등 보유자산	2.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3) 업무용기계장치	기계장치와 기타의 부속설비	3. 업무용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4) 업무용비품	책상, 의자, 캐비닛 등	4. 업무용비품
(감가상각누계액)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5) 사무실설비	네트워크 장비 등	5. 사무실설비

(감가상각누계액)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3. 무형자산		IV. 무형자산
(1) 기타의무형자산	구체적인 존재 형태가 없는 자산	1. 기타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V. 기타비유동자산
(1) 임차보증금	업무용 사무실, 합숙소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1. 임차보증금
(2) 기타보증금	채권보전조치에 따른 공탁금, 콘도회원권 등	2. 기타보증금

2. 부 채

일반기업회계기준	계 정 과 목 설 명	국가회계기준
I. 유동부채		I. 유동부채
1.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미지급금 (신용카드 집행 후 결제기일 미도래분 등)	1. 기타유동부채 (1-1) 미지급금
2. 미지급비용	미지급이자 등의 기발보정액	(1-2) 미지급비용
3. 선수수익	기간 미경과 보증료, 총당예정 보증료 등 기발 보정액	(1-3) 선수수익
4. 미환급보증료	피보증기업에게 미반환한 보증료환급 확정액	(1-4) 미환급보증료
5. 예수금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일시적 체 예수금	(1-5) 예수금
6. 선수금	현금의 수입은 있으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일시적 계정	(1-6) 선수금
7. 대위변제준비금	기발 보증 및 사고잔액에 대한 추정 예상 손실액	II. 장기충당부채 2. 기타장기충당부채 (2-1) 보증충당부채
8. 개인정보배상준비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비금	II. 장기충당부채 2. 기타장기충당부채 (2-2) 기타충당부채
II. 비유동부채		II. 장기충당부채
1.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보형예치금)	향후 퇴직할 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액 퇴직보형 사외 예치금액	1.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보형예치금)
2. 임대보증금	임대건물 보증금	III. 기타의비유동부채 1.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1-1) 장기예수금
3. 장기예수금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3. 자 본

일반기업회계기준	계 정 과 목 설 명	국가회계기준
I. 기본재산		I. 기본순자산
1. 설립시기본재산	설립시 기본재산	1. 기본순자산
2. 출연금	설립 이후 일반보증 운용을 위한 출연금 누계액	
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III. 순자산조정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보유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차익	1. 투자증권평가이익(손실)
III. 이월이익금(결손금)		II. 적립금및잉여금
1. 이월이익금(미처리결손금)	전기이월이익금(미처리결손금)	1. 적립금및잉여금
전기이월이익금(결손금)	전기까지 누적된 순이익(손실)	(1-1) 기초순자산
당기순이익(손실)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손실)	(2-1) 재정운영결과

4. 손 익

일반기업회계기준	계 정 과 목 설 명	국가회계기준
I. 영업수익		I. 프로그램순원가
1. 수입보증료		(1-1) 수익 (1) 보증수익
(1) 기중수입액	신용보증에 따른 수입보증료	(1-1) 수익 (1) 보증수익
(2) 기중환급액	기수입한 보증료의 환급액	(1-1) 수익 (1) 보증수익
(3) 전기미경과보증료환입	전기말 결산시 손실금으로 보정한 보증료 보정액의 기초환입액	(1-1) 수익 (1) 보증수익
(4) 당기미경과보증료보정	기간손익 계산방법에 의해 결산보정한 보증료 손실금	(1-1) 수익 (1) 보증수익
2. 추가보증료	피보증채무불이행액에 대한 추가보증료	(1-1) 수익 (1) 보증수익
3. 연체보증료	미납보증료에 대한 지연배상금	(1-1) 수익 (1) 보증수익
4. 예치금 등 이자		(1-1) 수익 (2) 이자수익
(1) 기중수입액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등 예치금에 대한 이자	(1-1) 수익 (2) 이자수익
(2) 당기미수이자보정액	기간손익 계산방법에 의해 결산보정한 예치금 등 이자 수익금	(1-1) 수익 (2) 이자수익
(3) 전기미수이자보정액	전기말 결산시 손실금으로 보정한 이자수익 보정액의 기초환입액	(1-1) 수익 (2) 이자수익
(4) 투자유가증권이자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자수익	(1-1) 수익 (2) 이자수익
5. 기타수입수수료	용자평가 수수료, 사후관리 수수료, 위탁관리 수수료	(1-1) 수익 (3) 수수료수익
6. 임대료 등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등 수익	(1-1) 수익 (4) 기타수익
7.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손해금	(1-1) 수익 (5) 손해금수익
II. 영업비용		I. 프로그램순원가
1. 제보증료		(1-1) 총원가 (1) 제보증비용
(1) 기중지급액	제보증에 따른 중앙회 납부 비용	(1-1) 총원가 (1) 제보증비용
(2) 기중환급액	기지출한 제보증료의 환급액	(1-1) 총원가 (1) 제보증비용
(3) 전기미경과제보증료환급	전기말 결산시 이익금으로 보정한 제보증료보정액의 기초환출액	(1-1) 총원가 (1) 제보증비용
(4) 당기미경과제보증료보정	기간손익 계산방법에 의해 결산보정한 제보증료	(1-1) 총원가 (1) 제보증비용
2. 관리업무비		I. 프로그램순원가 II. 관리운영비
(1) 인건비	임직원 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1) 총원가, (II-1) 인건비
(2) 경비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1-1) 총원가, (II-2-2) 경비
(3) 감가상각비	건물, 업무용기계 및 비품 감가상각비	(1-1) 총원가, (II-2-3) 감가상각비
(4)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1-1) 총원가, (II-2-3) 무형자산상각비
3. 지급수수료	보증료 등 신용카드거래에 따른 지급수수료, 기타 각종수수료	(1-1) 총원가, (II-2-7) 수수료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	당기에 추가로 계상해야 할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1) 총원가 (2) 충당부채전입
5. 대위변제준비금전입	당기에 추가로 계상해야 할 대위변제준비금	(1-1) 총원가 (2) 충당부채전입
6. 대지급금상각충당금전입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대지급금 상각액 등	(1-1) 총원가 (2) 충당부채전입
III. 영업손실		
IV. 영업외수익		VI. 비배분수익
1. 대여금이자수입	직원주택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IV-1) 수익 (1) 이자수익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환입	기말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잔액이 계상액을 초과할 경우 환입액	(1-1) 수익 (6) 충당부채환입
3. 대위변제준비금환입	기말 대위변제준비금 잔액이 계상액을 초과할 경우 환입액	(1-1) 수익 (6) 충당부채환입
4. 대지급금상각충당금환입	기말 대지급금상각충당금 잔액이 계상액을 초과할 경우 환입액	(1-1) 수익 (6) 충당부채환입
5. 특수채권기타회수금	특수채권에 대한 미수보증료·손해금 및 대지급금성비용 등의 회수액	(IV-1) 수익 (2) 기타수익
6. 잡이익	가지급금, 공탁금 및 기타 해당 항목이 없는 수입이자	(IV-1) 수익 (2) 기타수익
7.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에이전에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 오류의 정정사항에 속하는 이익금	(IV-1) 수익 (2) 기타수익

회계업무처리기준

V. 영업외비용		III. 비배분비용
1. 특수채권관리비	특수채권관리에 소요되는 대지급금, 재산조사비용 등 제비용	(III-F) 기타비용
2. 잡손실	기타항목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손실금	(III-F) 기타비용
3.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 이전에 과오수납한 금액	(III-F) 기타비용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손실)		
VII. 법인세비용	당기분 법인세, 지방소득세 계상액	
-		VI. 비교환수익
-		(VI -1) 부담금수익
VIII. 당기순이익(손실)		VII. 제정운영결과